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77-1 / 전화 (02) 737-0096 / 전송 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06065 -

시행일자 1996. 3. 26. (3)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3년	총괄심의관 : 	
조정관			
심의관			
기안	정연만		협조

제목 : 재활용제품의 사용확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6-7호)

1. 환경보전을 위한 재활용제품의 사용확대 시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제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국민이 재활용제품 사용을 생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은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5호)을 준수토록 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제품중 재활용제품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가능한 국내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도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 재활용제품 사용비율이 낮은 전자복사용지의 경우는 공급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량 국내 폐지를 이용한 재생복사용지 사용
- 각급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가능한 100% 국산 재생명합지 사용

- 나. 각급기관에서 운영하는 매점에 재활용제품을 비치·판매함으로써 매점 이용자가 재활용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재활용제품 조달구매시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하고 주요 폐자원의 비축을 확대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할 것
- 라.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재활용업체의 채산성과 재활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마. 재활용제품 구매시 계약방법이나 입찰조건을 완화하여 재활용업체가 쉽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

3. 아울러 상기 지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별첨 「재활용제품의 사용확대 방안」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재활용제품의 사용확대 방안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05 ~ 가54

再活用 製品 使用擴大 方案

1996. 4

國務總理行政調整室

I. 現 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이 낮음

< '94년 기준 >	<u>발생량 (톤/일)</u>	<u>재활용량 (톤/일)</u>	<u>재활용비율 (%)</u>
생활폐기물	58,118	8,927	15.4
사업장폐기물	85,229	52,208	61.3

- 종이 등의 재활용율은 높은 편이나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율은 저조함

	<u>종 이 류</u>	<u>고철 및 캔류</u>	<u>유리병류</u>	<u>플라스틱류</u>
우리나라	50.5	33.6	48.2	13.5
독 일	59.3	56.0	54	51.0
일 본	51.6	69.8	54	25.0

- * 종량제 시행결과 '95년 쓰레기 발생량은 2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35% 증가함

- 재활용제품의 생산은 205개 재활용 업체에서 105개 품목을 생산 ('94년 기준)

제 품 명	<u>생산량 (톤/년)</u>	<u>생산금액 (백만원)</u>
폐지 재활용품 (재생노트:권)	1,335,296 (695,000)	797,741 (139)
플라스틱	413,868	78,455
폐 고 무	528,868	21,747
폐식용유	41,415	36,677

II. 問題點

재활용제품의 사용확대를 위한 제반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활용제품의 품질·가격·판매망 및 소비자의식의 문제로 인해 재활용제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활용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품질은 낮은 반면, 가격은 별로 싸지 않음
 - 이는 폐자원가격이 불안정하고, 중간처리 및 환경오염방지비용 소요로 재활용제품의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

< 가격 비교 >

	<u>재활용제품</u>	<u>일반제품</u>	<u>비 고</u>
			(단위:원)
전자복사용지 (A4, 2, 500매)	11, 757	14, 330	△2, 573
노 트 (대형 10권)	2, 317	3, 200	△ 883
화 장 지 (50m, 10개)	2, 346	2, 850	△ 504
비 누 (1개)	250	200~450	조달가격 157

- 재활용제품의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판매장소 부족으로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음
- 소비자의 재활용의식이 낮은 데다 소비수준이 높아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기피
 - 재활용제품이라면 무조건 질이 나쁘거나 불결하다고 생각

Ⅲ. 對 策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 재순환형 사회구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재활용 촉진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활용 촉진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방안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1. 再活用製品의 品質管理 強化(환경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와 질적향상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충족 및 신뢰성 제고
- 재활용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 '96년 현재 재생비누등 16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KS 제정을 하였으며, '96년에 팔레트 등의 품목을 추가로 제정 추진
- KS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도 도입 검토
 - '96 상반기 중으로 세부시행계획 마련
 - 재활용제품 생산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대상제품 선정
 - 제품별 규격 및 품질기준, 마크 표시방법, 검사 및 관리규정 등 세부규정 마련
 - '9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2. 公共機關의 再活用製品 우선 購買·使用制度 活性化

공공기관부터 재활용제품의 구매·사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확산시켜 재활용제품 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도모

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사용기관 확대 (총리실, 관계부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총리훈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96.3 현재 90개 기관이 해당됨
 - 일부 공공기관이 제외되고 있어 '96년 중으로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107개 기관으로 확대
- 국무총리지시로 재활용제품 사용 강화
 - 조달구매를 확대하고, 구매시 입찰을 쉽게하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방안 강구
 - 특히, 복사용지는 공급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활용제품만 사용토록 함 (연간 150억원 증가예상)
- 재생명함지, 홍보물, 각종 보고서 등에 재생용지 사용 등 재활용제품 사용 장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선거관련 홍보물에 재생종이를 사용해 주도록 기 요청 (총리실, 환경부)

② 재활용제품의 조달 구매 확대 (조달청, 환경부)

- '96.3 현재 23개 재활용제품을 조달구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무용품류이며 공사용 물품의 사용실적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확대방안 강구

	'93	'94	'95	'96
구매량 (단위:억원)	65	130	310	350

- '96년중 재활용제품의 조달구매 확대 추진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과 일반제품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고 전량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매토록 함 (연간 200억원 증가 예상)
 - 사업목적상 일반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반제품 사용
 - 조달청은 재활용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적정구매가격을 책정하여 재활용제품의 생산원가를 최대한 보장토록 함

③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목표를 설정·운영 (환경부)

- '96년 상반기 중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제품의 특징, 재활용제품의 수요·공급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품목별 구매·사용 목표율 제시
 - 공공기관별 사용계획, 실적을 평가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토록 하여 구매 확대 도모

3. 民間부분의 再活用製品 購買·使用 擴大 強化

(내무부, 환경부, 통상산업부, 총무처, 공보처)

① 재활용제품 안내·사용권장제도 확대

- 재활용제품을 대상으로 기업명, 제품특징, 용도등 제품정보자료를 작성·배부하고 일반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도 사용을 권장
 -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제품 정보지를 60,000부 제작하여 2,000여개 기관에 배포,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가 배포
 - 신문, 방송(TV, 라디오)을 통한 재활용제품 사용 홍보
- 민간단체 중심의 재활용제품 사용 운동 전개 및 지원
 - 알뜰시장 등의 개설·운영시 부지, 장비, 정보 등 지원

② 재활용제품 판매장소 설치 활성화

- 공공기관 운영매점에 재활용제품 비치, 판매 확대
- 재활용제품을 비치·판매하게 되어 있는 대형백화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4. 再活用製品 生産業體에 대한 支援 強化

(재경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① 금융 및 세제지원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재활용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 '94년부터 환경개선특별 회계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
 - '94년 100억원, '95년 150억원, '96년 300억원

-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관련자금 적극 지원
- 세제지원
 - 재활용 폐자원 수집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품목 확대(현재 11개 품목 대상)
 - 재활용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방안 검토

② 구매방식 전환에 따른 원자재 구매·공급

- 조달청에서 재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민간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자재 수요업체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원자재
공급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여 공급
 - 수의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계약
방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조치하고,
 - 영세업체들을 위해 계약보증금(10%)을 경감하는 등의 방안검토

IV. 向後 措置計劃

-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되
 - 국무총리 지시로 시달한 사항은 즉각 시행·조치하고
 - 관계법령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방안을 마련
토록 조치
- 총리실에서는 심사·분석을 통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 필요시에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추진실태에 대하여 점검
하여 미진사항은 보완토록 조치

부처별 조치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재정경제원	○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내무부	○ 민간단체 중심의 재활용제품 사용운동 전개 및 지원 ○ 재활용제품을 비치·판매하게 되어있는 대형백화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통상산업부	○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KS제정) ○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민간부문의 재활용제품 안내·사용권장제도 확대
환경부	○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 KS 제정 및 KS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검토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사용기관 확대 ○ 재활용제품의 조달구매 확대 ○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목표율 설정·운영 ○ 민간부문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확대 강화 ○ 재활용제품 판매장소 설치 활성화 (공공기관 운영 매점 등) ○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총무처	○ 공무원연금매장에 재활용제품 판매장소 설치 지도
공보처	○ 재활용제품 안내·사용 홍보 강화
조달청	○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확대 - 복사용지 전량 재활용품 공급 등 - 구매시 적정구매가격 책정 ○ 구매방식 전환 - 원자재 수요업체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원자재 공급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여 공급 등
중소기업청	○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KS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협조
각부처	○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사용